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CHAPTER 01 수입 통관제도

제1절 식품수입절차 일반 ····· 107
제2절 제품별 관세 및 통관절차 ····· 121
제3절 통관실무 우수사례 ····· 132
정부 부서 연락처 ····· 133
자료 출처 ····· 136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개요 ····· 141
제2절 제품별 검역제도 ····· 143
자료 출처 ····· 148

CHAPTER 03 라벨링 및 포장

제1절 개요 ····· 155
제2절 라벨링 요구조건 ····· 156
제3절 라벨링 사례 ····· 160
제4절 포장 ····· 161
자료 출처 ····· 162
부록 ····· 164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chapter 01

수입 통관제도

제1절 식품수입절차 일반

1. 개요

□ Undang-undang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rtangPangan

○ 식품의 생산, 수입, 유통과 관련된 가장 종합적인 법안은 1996년 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 식품법안 Act No. 7 (Undang-undang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1996 tertangPangan) 으로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핵심법안이다.

○ 식품법안(Food Act)에는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식품은 생물학적 또는 물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가공 및 미가공 제품으로 인간이 섭취 또는 복용하도록 된 제품으로, 여기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제조, 조리, 가공 공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초 식품재료 이외에 식품 첨가물도 포함이 된다."

○ 또한 식품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식품과 관련된 안전, 품질, 영양 등과 같은 기술적 기준, 그리고 식품의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을 생산, 보관, 운송 그리고 유통하는 업자의 책임 및 그 결정내용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제재조치
- 소비되는 식품의 다양성 및 자급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
- 내수소비 및 수출되는 식품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

○ 인도네시아 식품수입 규정은 식품법안의 제5장에서 다루며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식품법안 및 그 시행규정의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회사만이 수입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수입면허의 주관부서는 무역부이지만, 의약 및 일부 식품과 같은 특별한 제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다른 정부부서의 특수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모든 수입제품들이 까다로운 동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절차가 요구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2. 농림 및 식품 수입절차 흐름도

□ 수입절차

○ 인도네시아는 수입업자가 여러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수입절차가 복잡하다. 회사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Surat Izin Usaha Perdangangan (SIUP: 무역면허)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모든 수입업자들은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관세청등록번호) 및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수입자등록번호) 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특히, 식품 및 음료 수입업자들은 추가적으로 Importer Indentification Number (IP/IT) 면허, 그리고 필요시 별도의 Registered Importer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 다음은 수입절차의 요약이다.

<table>
<tr><td rowspan="4">파트터십
형성</td><td colspan="2">기업이 수입업자가 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한다</td><td rowspan="4">수출자는 수입업자에게
제품과 관련된 관계서류
및 증명서 등을 제공한다</td></tr>
<tr><td colspan="2">SIUP</td></tr>
<tr><td colspan="2">NIK</td></tr>
<tr><td colspan="2">API</td></tr>
<tr><td rowspan="3">수입허가
신청</td><td colspan="2">수입하는 제품에 따라, 수입업자는 해당의
정부부서로부터 개별적인 제품수입허가를 신청한다</td><td rowspan="3">제품 등록
ML 번호</td></tr>
<tr><td>ITPT</td><td>수산물 수입허가</td></tr>
<tr><td>IP/IT 원예 제품</td><td>IT 동물 제품</td></tr>
<tr><td rowspan="3">제품의 운송</td><td colspan="3">통 관</td></tr>
<tr><td colspan="3">식물 및 동물 제품의 검역</td></tr>
<tr><td colspan="3">제품의 인도</td></tr>
</table>

□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 무역면허)

○ 인도네시아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려는 회사는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무역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SIUP에는 회사의 활동범위 및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SIUP 발급부서인 산업무역부는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의 letter of good conduct (적정시민인증서)를 요구할 수가 있다.

○ SIUP는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의 One Stop Shop Service (간편 업체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SIUP의 사례는 부록에 첨부가 되어있다.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 의 신청	
요구 서류	1.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사본) 2. 업체 주소 및 위치에 대한 확인서 3. 업체 대표자 혹은 이사의 신분증 (사본) 4. 공증된 문서
신청서 처리 소요기간	5-9 근무일
신청 비용	비용은 협상이 가능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우 최소 IDF 400,000-IDR500,000, 중견기업의 경우 최소 IDR 600,000-IDR700,000, 대형기업의 경우 최소 IDR750,000-IDR1,000,000에서 출발한다

□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NIK : 관세청 등록번호)

○ NIK는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이다.

○ “관세청 등록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관세청 이용자는 인도네시아 관세청(DGCE)으로부터 관세청 등록번호(Nomor Induk Kepabeanan, NIK)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규정 No. 63/PMK/4/2011

○ NIK 신청을 하려는 수입업자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관세청 서비스이용자의 내용, 임원 및 담당자의 신원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처리기간은 약 14일이 소요된다.

○ NIK는 관세청이 취소결정을 내리기까지 유효하다. 관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NIK를 취소할 수 있다.

- 수입업자가 연속된 12개월의 기간 동안 관세청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업자의 제출된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수입업자가 관세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고 있을 경우
- 수입업자의 사업면허가 만료가 된 경우

○ 취소 된 NIK는 취소결정이 발생한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복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NIK를 회복 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활동의 사실을 증명할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등록 자료에 대한 변경신고를 제출하여, 동 변경내용이 관세청에 의해 이미 승인이 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관세청 관련 형사위반 사안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고, 무죄가 확정이 된 경우
- 서비스이용자의 사업면허의 유효기간이 이미 연장된 경우

□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 수입업자 등록번호)

○ NIK와 더불어 수입업자 등록번호(API)가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 54M-DAG/PER/9/2009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규정에는 API가 있는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판촉제품, 연구개발목적의 제품, 자가 섭취의 제품, 일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제품 또는 빈도가 적은 수입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API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다.
- 장기적인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API의 취득이 필수적이다.

○ API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신청하며, 수입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갱신 신청은 5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 API는 API-U, API-P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수입업자는 하나의 API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API-U는 무역 혹은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되며,
- API-P는 원재료, 부재료 혹은 가공공정을 위해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이 된다.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API) 의 신청	
요구 서류	1.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 (설립취지서) (사본) 2. 소재 지역 관할청에서 발급한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 (사본) 3. 투자 등록서 (사본) 4. 투자 Approval in Principle (기본승인서) (사본) 5. BKPM에서 발급한 사업면허 (사본) 6. 납세자 ID 번호 (NPWP) (사본) 7. 기업 등록 증명서 (TDP) (사본) 8. 이사회 임원의 주민 ID 카드 혹은 여권 (사본) 9. IMTA (사본) 10. 이사회 전원의 붉은색 바탕의 3x4 사진 2매
신청 처리	5 근무일
신청 비용	IDR6,000
유효 기간	5년

○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는 문서형식으로 API 번호가 통지가 된다. 한국의 수출자들은 인도네시아 업체와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협력하려는 수입업자의 API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API 통지문서의 사례는 부록에 포함이 되어 있다.

○ API를 발급받은 업체들은 국제무역협력국에 매 3개월 단위로 수입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의 경우, 수입업자의 API는 취소가 될 수가 있다

- API가 2회에 걸쳐 효력정지를 당했을 경우
- API가 효력정지를 당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의무를 총족하지 않을 경우
- 보고 의무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 API 신청서에 허위 정보 또는 자료를 기재하였을 경우
- 수입 물품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입관련 규정 및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수입 및 수입관련 서류를 악용한 경우
- API의 악용과 관련된 범죄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 특수 분류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NPIK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해당 증명서가 없으면 수입품목은 항구에서 억류조치된다.

○ 특수품목에는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섬유 및 관련제품, 신발, 전자 및 완구가 포함되며, 동 조치는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해당 제품들의 대규모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 NPIK를 신청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들은 MoT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pecial Importer Identity Number (NPIK: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의 신청	
요구 서류	1. API-U를 취득한 업체 – API-U – 최근 5년간 사이의 2개년 연속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또는, 최근 1년간의 수입활동수행에 관한 보고서 및 차기 1년간 해외 교역 파트너와의 구매계약서 2. API-P를 취득한 업체 – API-P – 산업활동 허가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10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5년

○ 수입업자의 신청서가 승인이 되면, 수입업자에게 NPIK가 발급이 된다.

○ NPIK를 보유한 수입업자는 매월 15일에 국제무역협력국에 수입활동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NPIK는 취소될 수가 있다.

– NPIK의 내용에 변경, 추가, 대체를 하는 행위

– NPIK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취소불가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 Product Registration (ML Number : 제품등록번호)

○ 소비자보호법 (1999) 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adan Pengawas Obatdan Makanan (BPOM) : 국가의약식품관리청)에 등록해야 한다. 수입제품은 통관 이전에 BPOM에 등록 완료해야 하며, 해당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한다. 미등록된 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업자는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과금을 부과 받는다.

□ Makanan Luar (ML : 제품등록)

○ 예외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공식품은 ML을 발급받아야 한다. 예외품목은 다음과 같다

– 상온에서 7일 이하의 유통기한을 가진 가공식품

– 정부 또는 사회기관에 대한 기부행위의 가공식품

– BPOM 등록, 연구 혹은 개인섭취 등의 특수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소량의 가공식품

○ ML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불만접수에 따라, BPOM은 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미 인도네시아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BPOM의 승인을 받지 못한 식품제품에 대하여 임시 ML을 발급하기도 하였다. 200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비자보호법(1999) 시행에 들어가 수입 식품제품의 제품등록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모든 수입 식품제품들은 BPOM의 시험절차를 거쳐야 한다.

Makanan Luar (제품등록) 번호의 신청	
요구 서류	1. 식품의 견본 2. 해당할 경우, 라벨 (10매) 및 카타로그 3. 재포장되는 제품의 경우, 재포장을 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제품생산공장의 추천서 4. 라이센스 생산의 경우,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사업체의 사업면허 및 라인센스를 보유한 해외공장의 추천서 5. 수입제품의 경우, 생산공장의 추천서, 위생증명서 및 법규에 따른 방사능 무오염 증명서 6. 완성된 제품등록 서류 7. 다음과 같은 서류 : – 양식 A : 식품에 대한 일반정보,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 공장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양식 B : 제품의 성분 및 품질, 그리고 포장방법 – 양식 C : 내포장의 청결처리방법 및 봉합방법 등을 포함한 생산공정 – 양식 D : 품질관리 및 최종검사 절차 – 양식 E :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견본의 내용
신청 처리 소요 기간	6개월 이상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제품은 매 5년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 BPOM에서 제품등록신청을 받은 후,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Form M8을 발급한다.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 신청내용은 Form M9과 함께 반려가 된다.

○ 모든 제품은 BPOM에서 지정한 시설에서 신청자 부담으로 시험검사를 거친다. 시험검사 비용은 품목당 IDR 50,000 – IDR 2,500,000, 제품당 IDR 1,000,000 – IDR 10,000,000 에 이른다.

○ 모든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BPOM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발급한다.

- Form M1 : 제품등록신청이 승인이 된 경우
- Form M2 : 제품등록신청이 조건부로 승인이 된 경우
- Form M3 : 제품등록이 거부된 경우

3. 통관

□ 관세청의 역할

○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DGCE : 관세청)은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강제,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진다.

□ 해외의 출발지로부터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도착하는 모든 물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의 대상이 된다. 인도네시아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서류 및 실물제품에 대한 검사 등의 관세청 확인이 이루어진다.

○ 많은 기업들은 관세청 사안을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판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만, 관세 및 세제의 책무가 빠르게 누적되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고 500%에 달하는 행정적 벌과금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 관세청 통관절차

도착전	관세항구에의 도착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	화물 검사	인도	인수
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	관세신고서 제출	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	관세청지역으로 물품인도	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인수

○ 도착전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한다. 동 통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운송사의 상호
- 항공편, 선박편 등의 운송수단의 식별번호
- 운송수단의 명칭
- 출발항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진입직전의 최종 기착지
- 목적항
-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일
- 하역예정의 포장개수, 컨테이너 수 또는 벌크물품의 물량
- 인도네시아 관세지역 내의 다음 목적항

○ 관세 항구에의 도착

–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관신고서는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선박도착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 항공기 도착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내, 육로운송의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세관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운송수단의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
- 운송수단의 연료/식량 공급계획
- 운송수단의 적재계획
- 총기류의 목록
- 마약류를 포함하는 치료용 의약제품의 목록

○ 수입물품의 하역

–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

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다. 운송사는 12시간 이내에 하역된 컨테이너 혹은 벌크물량의 수기 또는 전자목록을 관세청에게 제출한다.

○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PIB)를 준비한다. 수입신고서 제출시 관세청이용자요금(Penerimaan Negara Bukan Pajak)을 내는데 이는 전자데이터교환(EDI)의 접속이용료로, 수출입 활동 자동화를 위한 IT 업무의 전송 및 유지를 위한 비용이다.
- 수입업자는 PIB를 제출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관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은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제세이다.

- 수입관세 : 수입되는 물품의 유형에 따라 0% – 170%의 요율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 (VAT) : 요율은 0% – 10%이다.
- 사치품 판매세 (STLG) : 제품의 유형에 따라 10%, 20%, 35%, 40% 혹은 50% 등이 적용된다
- 소득세 (PPH) : 등록된 수입업자는 2.5%, 미등록된 수입업자는 7.5%

- 위에 열거된 수입관세 및 제세는 PIB를 제출하기 전에 허가된 외환은행을 통해서 혹은 관세청 서비스사무소를 통해서 납부한다.
- EDI 시스템이 전면시행 되고 있는 Tanjung Priok 항구 및 Soekarno-Hatta 공항에서는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는 전자결제를 이용하여야 한다.

○ 화물 검사

-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 포장명세,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한다. 관세청 직원의 판단에 따라 물품의 실물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수입물품의 인도

-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된다. 수입물품의 인도시점은 화물 대기순서 분류에 따른다.
- 공식규정에는 MITA 일반(5 근무일)이외에는,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시점은 3

근무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절차는 이 보다는 빠르다. 실제로 녹색 통로의 경우 화물을 인도받기까지 일반적으로 30분이 걸린다.

1. 적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M)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2. 황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JK)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3. 녹색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는 생략이 되고, 문서확인 이후에 Approval Letter of Goods Release (SPPB) 이 발급되고 화물이 인도된다.
4. MITA 일반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일반 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된다.
5. MITA 우선 통로 : 수입물품에 대한 실물조사 및 문서 확인 없이 화물이 우선순위-주요 파트너에게 인도가 된다.

○ 물품의 인수

–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함구의 임시창고(창고 혹은 노상장소)에 보관될 수 있다.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이므로 지정된 기간 내에 통관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은 소유권자가 없는 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청이 제거, 폐기, 재수출 혹은 경매를 통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원산지 규정

□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규정의 발표를 관할하고 있으며, 동 규정들은 관세율과 관련된 특혜대우의 시행을 주안점으로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협약에 따른 특혜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ASEAN 물품교역 협약 (ATIGA)

○ ASEAN-중국 FTA (ACFTA)

○ ASEAN-한국 FTA (AKFTA)

○ ASEAN-인도 FTA (AIFTA)

○ ASEAN-호주 및 뉴질랜드 FTA (AANZFTA)

○ 인도네시아-일본 경제파트너협약 (IJEPA)

□ ASEAN-한국 FTA (AKFTA)

○ 동 특혜관세협약은 한국 및 다른 ASEAN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품에 적용이 된다. 수입업자는 관세율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의 무역인증서비스센타(KCCI)로부터 원산지증명서 (C/O) 양식을 발급 받아야 한다.

○ 현재 KCCI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한다. 한국과의 FTA 협약이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에는 FTA C/O가 발급이 된다.

○ 한국의 수출업자는 수출되는 물품이 인도네시아 세관에 도착하기 이전에 KCCI로부터 C/O를 발급받는 것이 권장된다.

5. 서류

○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양식(PIB)을 준비해야 한다. 세관신고양식의 유형은 수입의 목적에 따라 다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양식	
물품 수입 신고서 (PIB 양식)	BC 2.0
특정 물품 수입 신고서 (PIBK 양식)	BC 2.1
승객 혹은 운송수단 승무원의 물품 수입 신고서	BC 2.2
보세구역 보관예정 물품 수입신고서	BC 2.3
관세지역 (DPIL)을 출발하여 보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의 이전 신고서	BC 4.0
수출용도로 수입시설에 도착되는 수입물품에 관한 정산 신고서	BC 2.4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물품수입 신고서	BC 2.5
보세구역 보증부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서	BC 2.6.1
보세구역 보증부인도된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재진입 신고서	BC 2.6.2
보세구역간 물품이전을 위한 신고서	BC 2.7

○ 다음의 증빙서류들을 관세청신고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세청지역 진입 시에도 구비해야 한다.

- 선하증권 (B/L)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 (AWB)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보험증권
- 원산지 증명서 (C/O)
-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양식 사본
- 관세 및 제세 납부 증명 (영수증)
- 특정물품에 대한 관련 증명서
- 통제되는 물품에 대한 유효한 관련 허가서

○ 통관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할 수가 있다.

- 매매 계약
- 구매서
- 송금전표
- 제품 카달로그

○ 서류의 정정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2일 전에 모든 수입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권장된다.

제2절 제품별 관세 및 통관절차

1. 제품별 수입 및 통관절차

□ 포장식품

○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제품의 수입

관련"에 따라 무역부는 2010년 가을에 188개 식품 및 음료 항목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10자리 HS 관세코드의 505개 항목에 대한 수입제품의 요구조건을 강화하였다.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식품 및 음료 제품, 완성된 의류, 신발류, 전자류, 완구류, 전통의약품, 화장품 등이 포함이 된다. 동 규정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구체적 목록은 부록에 있다.

○ 동 규정에 따라 포장식품의 수입은 등록된 특정제품 수입업자 혹은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ITPT)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가 있다.

Importir Terdaftar Produk Tertentu (ITPT: 특정제품 수입업자) 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2. 기업 등록번호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NPIK에 특수제품의 수입허가가 표시된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사본) 5. 관세청 등록번호 (NIK) (사본) 6. 물량, 제품의 종류, 관세분류/HS 10자리 번호, 도착항 등이 포함된 1년간의 수입계획
신청 처리소요기간	7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 ITPT에 수록된 제품들은 전국의 국제공항 및 5개의 항구(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 Hatta) 등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Dumai 및 Jayapura 항구는 식품 및 음료제품의 선적항으로 이용될 수가 있다.

○ ITPT 수입업자들은 매 3개월마다 익월의 15일까지 http://inatrade.kemendag.go.id를 통해 수입제품의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ITPT로 수입되는 제품은 수입업자 부담으로 선적항에서 제품을 확인 또는 기술조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TPT가 철회 된다.

- 수입업자가 제4조에 요구되는 보고 의무를 2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수입업자가 특수제품을 연속된 6개월 동안 수입하지 않았을 경우
- 재무부산하 관세청에서 수입업자가 관세 사안에 대한 위반을 하였다고 보고할 경우

○ 수입업자는 ITPT가 철회된 6개월 이후에 새로운 ITPT를 위한 신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수입 포장식품의 경우, BPOM은 최소유통기간이라는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부과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유통기한이 2년 이상의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1.5년 이상
-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6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 유통기한이 3개월인 제품의 경우, 잔존 유통기한이 2개월 이상

□ 수산물

○ 수산물 관할부서는 해양수산부(DKP)이며, 수산양식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이 관할부서이다. 수산물의 인도네시아 수입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규정은 해양수산부 규정 No. PER.15/MEN/2011 –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이다.

○ 인도네시아에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입업자는 API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수산물 제품의 수입허가 (Suratalzin Pemasukan Hasil Perkanan) 도 의무사항이다. 수입허가의 발급은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관할이다.

수산물 수입허가의 신청	
요구 서류	1. 수입의 사유 및 목적 2. 학명 및 교역명 3. 유형 (10자리 HS 번호) 4. 전체 금액 혹은 물량, 그리고 규격 5. 원산지 국가 6. 운송 수단

수산물 수입허가의 신청	
	7. 도착 항구 8. 수입 일정 9. 수산물 원산지 10. 지역 정부기관의 추천서 11. API-P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HACCP 적용 증명서 ; API-U 수입업자의 경우 SKP (사본)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6개월

○ 수산물 수입허가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기재가 된다. 수산제품 수입허가 (Suratl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의 예제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 학명 및 교역명
- 유형 (10자리 HS 번호)
- 수량 혹은 용량
- 운송 수단
- 원산지 국가
- 입국 항구
- 수입 일정
- 수입 사유 및 목적

○ 수입업자는 수산제품의 도착에 대하여 관세청에 사전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활어수산제품은 도착 최소 2일 전에, 선어수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도착 1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또한, 검역의 목적으로 수산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원산지 국가의 위생 증명서
-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수산제품이 미생물 오염, 오염물질 잔류량,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의 오염이 없으며, 냉동제품의 경우 제품의 순중량이 95% 이상이며, 수산제품이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시험 성적서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설명서
- Good Aquacultural Practice (GAP) 인증서

○ 2010년 이후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특정 품종의 새우의 수입금지 관련"에 따라, 특정 품종의 새우에 대하여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 냉동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 (HS번호 : 030613), 그리고 활어 small shrimp 및 common shrimp (HS번호 : 030623).

○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모든 수산제품은 다음의 항구들을 통해서만 반입될 수가 있다.

- 모든 국제 공항
- 해항 : Medan의 Belawan, Jakarta의 Tanjung Priok, Semarang의 Tanjung Emas, Surabaya의 Tanjung Perak, Makassar의 SoekarnoHatta
- Entikong의 국경 검문소

○ 수산 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규정 No.KEP.025/DJ-P2HP/2012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수산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에 반입될 수가 없다.

-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든 수산 제품
- 계절의 영향을 고도로 받는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에 양식되지 않은 수산 제품
- 인도네시아 어민 또는 농민에 의해 역외에서 생산되는 수산 제품

□ 신선 과일 및 채소

○ 가장 최근의 신선 과일 및 채소 관련 규정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이다. 동 규정에 따르면, 원예는 과일, 채소, 채소재료 및 채소, 채소재료 및 화훼류를 총칭하며 진균류, 이끼류 및 수생식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규정에는 딸기 및 버섯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무역부로부터 원예제품의 생산자 및 수입자(IP-원예제품) 혹은 원예제품의 등록 수입자(IT-원예제품)의 면허를 취득한 수입업자만이 원예제품의 수입활동

을 수행할 수가 있다.

○ IP-원예제품의 취급자로 인정받기 위해 무역부 산하 국제무역협력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P/IT - 원예제품의 신청	
요구 서류	IP-원예제품 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발급된 원예제품 원재료의 취급을 허용하는 사업면허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 2. 사업자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 4. 생산자/수입자 등록 번호 (API-P) (사본) 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 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 7. 농림부 장관 혹은 그 위임을 받은 관리로부터의 원예제품 수입 추천서 (RIPH) IT-원예제품 1. 정부부서 혹은 기술연구소 등으로부터 사업영역이 원예를 포함하고 있는 무역사업면허 (SIUP) 또는 유사 사업인가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 번호 (NPWP) (사본) 4. 일반 수입업 등록 번호 (API-U) (사본) 5. 냉장 보관시설 (냉장보관) 소유권 증빙자료 6. 냉장 운송수단 소유권 증빙자료 7. 최소 3개 유통업자와 각기 최소 1년 기간의 원예제품 매매계약 증빙자료 8. 최소 1년 원예제품 유통경험 증빙자료 9. 원예제품이 소비자 혹은 소매상에 직접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한 공증된 문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 인도네시아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따라,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 사전통보는 의무사항이다. 동 규정의 목적은 신선 과일 및 채소가 병충해로부터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신선 과일 및 채소를 수입하기 위해 사전통보 되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원산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로부터의 식물검역 증명서 (Phytosanitation Certificate)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원산지국가로부터의 무해충 생산지역 확인서

○ 가장 최신의 농림부 규정 No.42/Perma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을 위한 식물검역 행위 관련"은 신선 과일 및 채소는 다음 4개의 진입항구로만 수입이 될 수가 있다.

- Surabaya, Tanjung Perak 해항
- Medan, Belawan 해항
- Jakarta, Soekarno-Hatta 공항
- Makassar, Soekarno-Hatta 해항

○ IT-원예제품 수입업자는 농림부 산하 농림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에 매월 15일에 월간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월간보고서에는 원예제품 수입실적에 대한 보고, 관세청 직원이 서명한 수입실적 관리카드의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인삼

○ 인도네시아는 인삼수입과 관련한 특별한 규정 혹은 법규가 없다. 인삼의 형태 및 분류에 따라, 인삼은 포장식품 또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수입절차를 따른다.

○ 인삼이 전통식물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된다면 포장식품을 관할하는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인삼이 뿌리삼의 형태라면, 신선 과일 및 채소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인삼은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 수입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 유아용 조제분유

○ 2011년 10월에 무역부 규정 No.24/M-DAG/9/2011 –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수출입조례 관련"이 발효가 되었으며, 동 규정에는 HS 번호 01, 02, 04 및 16류의 제품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유아용 조제분유는 – HS번호 040210,

040221, 040229 및 040290으로 분류가 되어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등록 수입업자–Importir Terdaftar Hewandan Produk Hewan(IT–동물 및 동물성제품)–로 등록하여야 하며, 동 등록서는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조제분유를 수입하기 위한 인가면허가 된다.

○ IT–동물성제품 면허 발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INSW)를 통하여 국제무역협력국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IT –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신청	
요구 서류	1. 무역 등록 면허 (SIUP) 혹은 동물 및 동물성제품 분야 사업면허 (사본) 2. 사업자 등록증 (TDP) (사본) 3. 납세자 등록번호 (NPWP) (사본) 4.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사본) 5. 법령에 따른 번식장 소유권 증빙자료 및 동물 보호소 소유권 증빙자료 또는 동물보호소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물보호소와의 계약서 6. 냉장 저장시설 소유권 증빙자료 및 동물성제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의 소유권 증빙자료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유효 기간	2년, 연장 가능

○ IT–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수입업자 등록 후, 수입업자는 수입계획을 가진 각각의 제품에 대하여 국제무역협력국에 서면보고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은 원산지국가에서의 건강증명서 발급의 근거가 되며, 검역과정에서 제출되는 건강증명서에 명시 되어야 한다.

유아용 조제분유 수입승인의 신청	
요구 서류	1. IT–동물 및 동물성제품 허가서 (사본) 2. 6개월에 걸친 동물/동물성제품의 수입 계획 3. 동물성제품 및 신선 동물성제품의 수입에 대한 농림부 추천서
신청 처리 소요기간	5 근무일
신청 비용	무료

○ 수입승인 신청은 연간 2회(5월, 11월)의 기간에 걸쳐 접수가 된다. 수입승인서는 원산지국가에서의 동물 및 동물성제품의 건강증명서의 근거가 된다. 수입승인을 받은 IT-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입업자는 매월 15일까지 전월의 수입실적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국제무역협력국, BPOM 및 농림부 축산 및 축산 건강국 등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동 월간보고서는 동물 및 동물성제품 수입승인서 사본 및 관세청 직원이 서명한 수입실적관리카드 사본 등으로 구성이 된다.

○ 우유제품 수입시 검역의 목적에 필요한 아래의 서류를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 원산지국가의 인가된 기관으로부터 제품이 위생표준, 그리고, 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HACCP/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요구조건의 충족 등에 관한 수의학기준의 기술조건 등의 표준을 충족한다는 건강증명서 또는 위생증명서
- 원산지 증명서
- 위험요인분석 증명서
- 제품원산지, 생산공정, 구성내용, 생산자/제조자 상호, 제품 유형, 유통기한, 생산관리번호, 목적 등이 명기된 제품 등록 서류
- 벌크상태의 우유의 경우, Halal 인증서 혹은 선언서가 요구된다.

2. 제품별 관세율

○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의 일반 관세율 평균은 37.1%이었으며,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평균은 6.8%이었다.

○ 인도네시아는 수시로 적용 관세율을 변경한다. 2009년 및 201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경쟁하는 여러 유형의 제품에 대한 적용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여기에는 화학, 전자제품, 전기 및 비-전기 밀링기계, 화장품, 의약품, 철선, 와이어못 이외에 우유제품, 동물성 및 식물성 기름, 과일 쥬스, 커피, 홍차 등의 다양한 농산물들이 포함 되었다.

○ 농산분야에서는 1,300여 제품들은 40% 이상의 고정관세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 감자의 관세율은 고정관세율이 50%이며, 적용관세율이 20%이

다. 이러한 고정 및 적용 관세율의 큰 편차 그리고 적용 관세율의 임의성 등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려는 많은 외국기업들에게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 포장 식품

○ 포장식품에 관한 HS분류체계의 상이성으로 포장식품에 대한 통일된 관세율 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코렛 및 사탕류에 대한 평균 MFN 관세율은 가장 높은 7.1%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제품들은 약 5%대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AKFTA의 존재로 많은 한국계 포장식품 업체들은 수출제품에 대하여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 다음은 주요 포장식품 제품에 대한 관세율 표이다.

▌표1 : 포장식품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70490	설탕 사탕류, 코코아 미포함	10%	0%
190230	즉석 면	10%	0%
220290	기타 비알콜성 음료, 포장	5%	0%

□ 수산물

○ 수산물은 2011년도에 MFN 평균 관세율이 5.8%이었으며, 최고 관세율은 15%이었다. AKFTA에 따라 대부분의 HS번호 03류의 수산제품들이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정어리, 참치, 랍스터 등의 일부 제품들은 5%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 다음은 일부 수산제품의 관세율 예시이다.

▌표2 : 수산제품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21220	해조류, 신선 또는 건조, 분말 또는 생	5%	0%
200899	과일 및 식물의 기타 식용가능 부분	5%	0%

(주 : Euromonitor 담당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관세청의 분류법에 따라 해초류는 "식물의 식용가능부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해초류는 HS번호: 2008류에 해당이 된다.)

□ 신선 과일 및 채소

○ 2011년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MFN 평균 관세율은 5.9%이었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가장 높은 MFN 관세율은 25%인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한국의 수출업자들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는 0%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 다음은 주요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관세율 표이다.

▌표3 : 신선 과일 및 채소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081110	딸기	5%	0%
080810	사과	5%	0%
080830	배	5%	0%
080610	포도	5%	0%
080590	감귤류, 신선 또는 건조	5%	0%
070959	버섯, 신선 또는 건조	5%	0%
0703102900	기타 골파류	20%	0%
0706101000	당근	20%	0%
0804502000	망고	20%	0%
0805200000	만다린 귤	20%	0%

□ 인삼

▌표4 : 인삼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21190	제약, 향수,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식품 및 식물부분 (씨앗 및 과실 포함)	5%	0%
121120	기타 건조 인삼뿌리, 절단 및 미절단, 분쇄 혹은 분말	5%	0%
200599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	5%	0%
300490	중국식 의약품, 기타성분, 소매를 위해 일정 분량으로 권장 또는 포장되는 제품	5%	0%
130219	기타 식물 즙 또는 엑기스	5%	0%

□ 유아용 조제분유

다음은 유아용 조제분유의 관세율 표이다.

▌표5 : 유아용 조제분유 관세율▐

HS 번호	제품 설명	고정 관세율	MFN 관세율
190110	유아용 식품, 소매용	5%	0%
040210	분말, 과립 및 기타 고체형태, 지방분이 전체중량의 1.5% 미만	5%	0%

제3절 통관실무 우수사례

□ 식품의 수입절차는 대체적으로 간단명료하나 수입절차 전체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규정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 모두 자료내용에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작은 누락 혹은 오류들이 수입절차의 상당한 지연 또는 물품의 통관거부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올바른 파트너의 선정

○ 인도네시아 수출희망업체들이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언어의 장벽 때문에 비-인도네시아의 수출자들이 원활한 수입절차를 수행하기도 어렵다는 점도 지적이 된다. 수입과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영어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 경험 있는 인도네시아 수입자들은 초기 등록 및 통관 등의 과정에서 수입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 해줄 수가 있다. 이미 등록된 수입업자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수입절차는 최대 1개월 정도 단축 되며 통관절차도 신속하다.

□ ML 번호의 조기 등록

○ ML번호 등록의 과정이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업자 및 수출자 모두 최단시간 내에 ML 번호의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BPOM의 관리에 따르면, ML 번호 등록이 전체 수입절차의 가장 큰 병목사안이며, 인도네시아에 제품이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다. 관세청 지역에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한 ML 번호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업자들은 ML 번호의 등록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제품의 숙지

○ 수출자 및 수입업자가 자신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유형 및 종류에 대하여 고도의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을 기재하면 상당한 금액의 벌과금을 부과한다.

○ 제품신고를 잘못하여, 수입관세의 납부에 오류를 일으킨 수입업자/수출자에 대하여서는 전체수입관세의 최소 100%, 최대 500%에 달하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정부 부서 연락처〉

□ Ministry of Trade (무역부)

- 전화 : +62 21 385 8171
- 팩스 : +62 21 385 8191
- 웹사이트 : http://www.kemendag.go.id/

□ 국제무역협력국

- 전화 : +62 21 385 8171
- 팩스 : +62 21 385 8191
- 웹사이트 : http://www.kemendag.go.id/

□ 표준화 및 소비자보호국

- 전화 : +62 21 385 8171
- 팩스 : +62 21 385 8191
- 웹사이트 : http//ditjenspk.kemendag.go.id/

□ Ministry of Finance (재무부)

- 전화 : +62 21 380 8388 / 381 4324
- 팩스 : +62 21 381 0181
- 웹사이트 : http://www.depkeu.go.id/

□ 관세청

- 전화 : +62 21 489 0308
- 팩스 : +62 21 489 7511
- 이메일 : humaskpdjbc@customs.go.id
- 웹사이트 : http://www.beacukai.go.id

□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

- 전화 : +62 21 525 2008
- 팩스 : +62 21 526 4211
- 웹사이트 : http://www2.bkpm.go.id/

□ National Agency of Drugs & Food Control (국가 의약 및 식품관리청)

- 전화 : +62 21 424 5331 / 4288 3309 / 4288 3462
- 팩스 : +62 21 426 3333
- 이메일 : informasi@pom.go.id
- 웹사이트 : http://www.pom.go.id

□ Ministry of Agriculture (농림부)

- 전화 : +62 21 780 4086 / 780 4056 / 780 6131

- 팩스 : +62 21 780 4237
- 이메일 : webmaster@deptan.go.id
- 웹사이트 : www.deptan.go.id

□ 축산서비스국

- 전화 : +62 21 781 5580
- 팩스 : +62 21 781 5581
- 웹사이트 : http://www.ditjennak.go.id

□ 농산물 검역청

- 전화 : +62 21 781 6483
- 팩스 : +62 21 781 6483
- 웹사이트 : http://karantian.deptan.go.id

□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해양수산부)

- 전화 : +62 21 3621 977
- 팩스 : +62 21 3522 040
- 웹사이트 : http://wee.kkp.go.id/

□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국

- 전화 : +62 21 352 1977
- 이메일 : suatphqalung@dkp.go.id

□ 국가 표준 청

- 전화 : +62 21 574 7043
- 팩스 : +62 21 574 7045
- 웹사이트 : http://www.bsn.go.id/

□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학자 의회 (Majelis Ulama Indonesia : MUI)

- 전화 : +62 21 8358 748
- 팩스 : +62 21 8358 747
- 웹사이트 : http://www.halalmui.org

〈자료 출처〉

1. 법안

관계 법령	
UU 03/1982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3 (1982) – 기업 의무 등록제
UU 05/198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5 (1984) – 산업 전반
UU 10/1995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0 (1995) – 관세 법령
UU 07/1996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7 (1996) – 식품
UU 08/199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08 (1999) – 소비자 보호
UU 31/2004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31 (2004) – 수산업
UU 17/2006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17 (2006) – 인도네시아 관세 법령 개정
UU 25/2007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25 (2007) – 투자
UU 36/2009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안 No.36 (2009) – 건강

2. 규정

□ 관세청 발표

○ 관세청장 조례 No.KEP-22/BC/1997 – 관세 신고금액 산정 양식 및 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32/BC/1997 – 관세청 수입신고서 (PIB) 제출 이전의 관세 신고금액의 승인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68/BC/2003 – 수입분야의 관세업무절차에 관한 기술지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14/BC/2005 – 우선순위 통로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01/BC/2006 – 수입분야 관세절차 지침서 조례 No.KEP-07/BC/2003에 관한 3번째 개정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SE-06/BC/2007 – 수입제품의 실물검사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36/BC/2007 – 수입업자 등록절차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KEP-03/BC/2008 – ASEAN-한국 자유무역지대 (FTA)의 틀 내에서의 수입관세율 표시에 관한 기술지침서

○ 관세청장 조례 No.P-01/BC/2009 – 수입제품의 인도에 대한 지침서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05/BC/2009 – 관세청 등록번호의 시행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30/BC/2009 – 관세청에의 수입통보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ER-50/BC/2011 – 보세창고 관련

○ 관세청장 조례 No.PER-57/BC/2011 – 보세구역 관련

□ 무역부 발표

○ 무역부 규정 No.54/M-DAG/PER/10/2009 – 수입산업분야의 일반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46/M-DAG/PER/9/2009 – 수입업자 등록번호 관련

○ 무역부 규정 No.17/M-DAG/PER/3/2010 – 수입업자 등록번호 (API) 규정 No.45/M-DAG/PER/9/2009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141/MPP/KEP/3/2002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관련

○ 무역부 규정 No.07/M-DAG/PER/3/2008 –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NPIK) 규정 No.141/MPP/KEP/3/2002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28/M-DAG/PER/6/2009 – 인도네시아 National Single Window (국가단일창구) 내 INATRADE를 이용한 전자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허가 서비스와 관련

○ 무역부 규정 No.56/M-DAG/PER/12/2008 – 특정 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23/M-DAG/PER/5/2010 – 특정 제품의 수입조례 규정 No.56/M-DAG/PER/12/2008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57/M-DAG/PER/12/2010 - 특정 제품의 수입 관련

○ 무역부 규정 No.52/M-DAG/PER/12/2010 - 인도네시아 영내로의 특정 종류의 새우의 수입금지와 관련

○ 무역부 규정 No.30/M-DAG/5/2012 - 원예제품의 수입조례 관련

○ 무역부 규정 No.24/M-DAG/PER/9/2011 -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수출입조례 관련

□ 기타 정부기관 발표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15/MEN/2011 - 인도네시아에 진입하는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안전 관련

○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 - 인도네시아에 과일 및 신선 채소과일을 수임하기 위한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기술요구서 관련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개요

○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관련"은 수생종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의 수입, 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검역 요구조건을 정의하고 있다.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 검역부문의 최상위 법안이다. 동 법안의 시행 이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검역제도 및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장관규정 및 결의, 소관부서 결정사항 등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 농림부 산하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은 검역제도의 중심 집행기구이다. 추가로, 해양수산부는 산하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해 수산제품을 규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는 관련 조례 및 규정의 변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검역제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선 과일 및 채소는, 이전에는 8개의 관세 항구를 통해 인도네시아 반입 할 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4개의 관세항구를 통해서만 입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의 검역절차▐

검사	인가된 기관에서 요구서류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역대상이 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한다
격리	장기간, 특수시설, 제어된 환경조건 등을 요구하는 검역대상 제품은 격리되어질 수가 있다
관찰	격리된 제품에 대하여 추가적 관찰이 진행된다
처리	검역대상의 제품은 다음의 경우에 처리가 된다 : 1.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오염/감염 또는 오염/감염되었다고 의심이 갈 경우 2. 동물, 수산물, 식물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거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의심이 갈 경우
억류	인도네시아에의 수입 요구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대상 제품은 억류가 된다. 정부는 수입업자에게 규정충족을 위해 허용되는 기간을 명시한다.
거부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은 거부가 된다 : 1. 검사결과, 검역대상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혹은 질병에 오염 또는 감염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어 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요구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3. 억류 조치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 운송수단 내에서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폐기	다음의 경우, 제품은 폐기가 된다 : 1.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이 되고, 후속적인 검사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에 감염이 되었거나, 부패하고 있거나, 훼손이 되었거나, 수입이 금지된 종에 속할 경우 2. 입국 거부 이후에, 지정된 기간 이내에 소유주가 해당 제품을 인도네시아 영외 또는 목적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송하지 않을 경우 3. 격리 후 관찰에서, 제품이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의 오염/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4. 운송수단에서 하역후 추가 처리가 되었으나, 운송수단이 동물, 수산물, 식물의 검역항목의 해충 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
인도	제품이 오염 또는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경우, 제품은 인도가 된다. 수입업자가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도증명서가 발급이 된다.

○ 검역절차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제출 또는 작성되어져야 한다. 요구되는 서류는 수입되는 제품의 유형에 따른다. 일부의 서류양식 및 요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1. 운송수단/목재포장재/PSAT 확인서
2. 식물검역시행절차/안전감독/PSAT 승인서
3. 화물하역 승인서

4. 훈증 증명서
5. 소독 증명서
6. 식물 검역 증명서
7. 운송수단 도착 보고서
8. 원산지 및 경유지 국가의 건강 증명서

제2절 제품별 검역제도

1. 일반 포장 식품의 검역절차

○ 일반 포장 식품에 대한 검역제도는 없다.

2. 수산물의 검역절차

○ 해양수산부는 산하 검역, 품질관리 및 수산제품안전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산제품의 검역제도를 관장한다. 가장 중요한 법안은 인도네시아 법안 No. 15 (2002) – "수산물의 검역"의 법안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법안 및 규정에 따라, 수산제품의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 도착 후, 수입업자는 선적된 화물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서류들을 진입항의 검역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tep 2.

○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게 검역검사를 요청한다.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의 완벽성을 검토한다 :

1. 수산제품의 수입허가
2. 검역청장 명의로 발급된 수산물 검역내용의 지시서 (사본)
3. 원산지의 인가된 기관이 발급한 수산검역분야의 건강 증명서 또는 수산품질분야의 건강 증명서
4. 원산지 국가의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C/O)
5. 수입되는 수산제품이, 수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미생물 오염, 잔류물질, 오염물질, 유해물질 등의 오염이 없고, 냉동상태에서 순중량이 최소 95%를 충족하고 있다는 원산지국가의 시험성적서.
6.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설명서
7. 수산제품 양식에 관한 GAP 증명서

Step 4.

○ 서류가 구비되지 못하였을 경우, 검역담당관은 서류보완지시와 함께 관세지역에서의 실물조사의 기일을 최대한 3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다. 수입제품에 대한 서류확인 및 실물조사가 완료된 이후, 진입항구로부터 운송을 인도한다는 승인서가 발급 된다.

Step 5.

○ 검역담당관은 검역행위를 검역시설에서는 3일간, 인가된 실험실에서의 품질실험은 10일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한다. 검역담당관은 수산제품 견본이 검역시설에 입고된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시료채취를 하여 검역행위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사이의 상호인증협약 (MRA) 혹은 양해각서 (MoU)에 따라 한국 수출자에 대한 임상검사 및 실험실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1%이다.

Step 6.

○ 검역담당관이 진입항구로부터의 화물인도증명서 (KI-D15)를 발급하는 것으로 검역절차는 종료가 된다.

3. 신선 과일 및 채소의 검역절차

○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절차는 인도네시아 법안에 설명된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하다. 인도네시아 법안 No.14/2002 – "식물 검역"이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인 지침서이다.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된다 :

Step 1.

○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7일 이전에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수입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들은 수입계획을 인도네시아 농림검역청(IAAQ)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체 금액
2. 제품의 유형
3. 생산지역 및 상표
4. 운송수단
5. 목적적/경유지 항구
6. 포장재의 종류
7. 컨테이너 번호

Step 2.

○ 수입업자들은 진입항구의 검역담당관에게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도착을 보고하고, 실물을 인도한다. 농림 검역담당관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국내식물검역 통과증명서 (KT 2)를 발급한다.

Step 3.

○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확인 한다.

1. 식물, 종자 진입 허가서
2. 식물 건강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서
4. 운송수단의 도착 계획
6. 화물 목록

7. 선하증권 (B/L)
8. 항공화물운송장 (AWB)

Step 4.

검역담당관은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검역식물방해생명체 (OPTK) 의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물의 상태에 대한 의료검사 및 위험요인분석을 실시한다.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OPTK가 인도네시아 영내에 진입 및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tep 5.

검역담당관은, 수입된 신선 과일 및 채소가 OPTK 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 장의 section 1에 나열된 표준 검역통관절차를 수행한다.

Step 6.

수입업자는 검역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Step 7.

검역담당관은 미-감염/미-오염 증명서 (KT 9)을 발급하여, 제품을 인도한다.

4. 인삼의 검역절차

신선 인삼의 검역절차는 식물 및 종자의 검역절차와 동일하다.

5. 유아용 조제분유의 검역절차

유아용 조제분의의 검역절차에 관한 규정은 농림검역사무소장 조례 No.436.a/KPTS/PD.670.320/11/07 – "우유 및 우유제품의 동물성제품에 관한 검역항목 및 절차"를 따른다.

Step. 1

수입업자는 화물도착 최소 2일 이전에 검역담당관에게 화물의 도착을 알리는 통보서를 제출한다.

Step. 2

화물도착 통보서와 함께, 수입업자는 검역담당관에서 검역조사 요청서를 제출한다.

Step. 3

검역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1.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기관에 의하여, 제품이 위생과 관련된 표준요건을 충족하고, 건강한 동물을 확인하는 축산의 기술요건을 충족하고, HACCP/GMP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강 증명서 또는 위생 증명서
2. 원산지 증명서
3. 위험요인 분석 증명서
4. 동물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API 및 IP 수입 허가서
5. 원산지, 생산공정, 성분, 생산자/제조자의 상호, 제품 유형, 유통기한, 생산번호, 목적 등이 표시된 제품 등록서
6. 우유 또는 크림이 인가된 처리공장에서 이슬람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었다는 Halal 증명서 (또는 유사 증명서)

Step. 4

검역담당관은, 서류상의 하자 또는 위반 내용이 없으면, 실물조사를 수행한다. 실물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유 수송의 codex 요구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검사
2. 포장 검사
3. 포장 온도 검사
4. 적재 방법
5. 봉인 및 라벨
6. 분유의 실물 조사

Step. 5

검역담당관은 다음을 포함하는 실험실 분석을 수행한다 :

1. organoleptic (감각기관) 시험
2. 우유의 원산지국가가 희귀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검역담당관은 실험실

분석을 수행한다.

3. 중금속 및 기타 유해물질의 잔류량 시험

Step. 6

모든 시험과 분석들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검사관들이 이상없음 소견을 내면, 검역담당관은 물품인도 증명서를 발급한다.

〈자료 출처〉

□ 법안

근거 법령	
UU 16/1992	인도네시아 법안 No.16 (1992) – 동물, 수산물 및 식물의 검역
UU 10/1995	인도네시아 법안 No.10 (1995) – 관세법

□ 농림부 규정

○ 농림부 규정 No.469/KPTS/HK.310/8/200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식물 및 종자의 수입과 관련된 검역행위 기준 관련 규정 No.38/KPTS/HK.310/1/1990의 부속서 III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206/KPTS/TN.530/3/2003 – 동물 검역 질병의 분류 및 병원체 전달경로의 분류

○ 농림부 규정 No.103/KPTS/HK.060/M/2/2004 – 식물검역행위의 양식 및 서류의 종류

○ 농림부 규정 No.508/KPTS/PD.520/8/2004 – 식물검역항목 해충의 종류 및 전염경로

○ 농림부 규정 No.38/KPTS/HK.060/1/2006 – 식물검역 분류 A1 및 A2의 Group I 및 분류 A1 및 A2 의 Group II의 방해 생명체의 유형 및 숙주 식물, 전염 경로, 분포지역 등

○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 – 인도네시아 영내로의 과일 및

신선 과일채소의 수입에 관한 식물검역행위의 기술표준

○ 농림부 규정 No.05/Permentan/HK.060/3/06 – 개인 및 기관의 소유인 식물검역소의 설치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271/KPTS/HK.310/4/2006 – 제3자에 의한 식물검역행위의 수행에 관한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34/Permentan/OT.140/7/2006 – 동물 검역소의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5/2006 – 진입 및 진출 장소 이외에서의 식물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52/PERMENTAN/OT.140/10/2006 – 식물 검역항목의 추가

○ 농림부 규정 No.51/KPTS/OT.140/10/2006 – 검역된 동물의 질병의 검사, 관찰 및 치료에 관한 내부적 업무관계도에 관한 지침서

○ 농림부 규정 No.62/Permentan/OT.140/12/2006 – 병원균 물질 및 축산의학 생물학시료 유형의 진입에 관한 관찰 및 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알뿌리)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

○ 농림부 규정 No.09/PERMENTAN/OT.140/2/2009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해충 전염경로 식물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12/Permentan/OT.140/2/2009 – 인도네시아 역내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행위 요구조건 및 절차

○ 농림부 규정 No.37/Permentan/OT.140/7/2009 – 식물검역처리 및 선적전 처리에 사용되는 활성 취화메틸을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의 사용 관련

○ 농림부 규정 No.46/Permentan/HK.340/8/2010 – 검역 동물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물체의 전염경로 해충 및 질병의 진입 및 확산위치 관련

○ 농림부 규정 No.56/Permentan/OT.140/9/2010 – 진입 및 확산위치 이외의 장소에서의 식물검역조건의 수행 관련

○ 농림부 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에 관한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94/Permentan/OT.140/12/2011 – 검역 동물 질병 및 검역 식물 방해 생명체의 전염경로 진입 및 확산위치

○ 농림부 규정 No.16/Permentan/OT.140/3/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bulbs (알뿌리) 형태로의 생식물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 요구조건 및 행위에 관한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18/Permentan/OT.140/2/2008에 대한 개정규정인 농림부 규정 No.90/Permentan/OT.140/12/2011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15/Permentan/OT.140/3/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기술요건 및 식물검역행위 규정인 농림부 규정 No.37/KPTS/HK.060/1/2006에 대한 개정규정인 농림부 규정 No.89/Permentan/OT.140/12/2011에 대한 개정

○ 농림부 규정 No.43/Permentan/OT.140/6/2012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layer 뿌리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

○ 농림부 규정 No.42/Permentan/OT.140/6/2011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신선 과일 및 신선 채소의 진입과 관련한 식물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발표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7/MEN/2003 – 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 분류, 감염경로, 전파방법 등의 확인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6/MEN/2003 – 검역항목의 해충 및 수산물 질병의 진입 및 진출 항구의 지정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18/MEN/2003 – 인도네시아 역내로의 검역항목 해

충 및 수산물 질병 전염경로의 수입 및 역내의 타지역으로의 이동에 관한 검역 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KEP.34/MEN/2003 – 수산물 검역의 건강증명서 및 수산제품의 품질 및 위생 건강증명서의 발급 인가 기관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55/MEN/2004 – Sumatra지역의 일반 Carp 및 Koi (잉어류) 검역대상지역 선포서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4/MEN/2005 – 수산물 검역행위의 서류 양식, 형태, 발급방법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3/MEN/2005 – 제3자에 의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05/MEN/2005 – 검역항목 해충 및 수산물 질병 감염경로의 수출과 관련된 검역행위

○ 해양수산부 규정 No.PER.10/MEN/2012 – 수산물 검역 추가 의무사항

□ 기타 정부기관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82/2000 – 동물 검역 관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14/2002 – 식물 검역 관련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15/2002 – 수산물 검역 관련

○ 무역부 규정 No.51/M-DAG/PER/12/2007 – 검역 및 선적전 사용을 위한 취화메틸의 수입 관련 조례

chapter 03

라벨링 및 포장

제1절 개요

□ **식품 라벨링은 규정 No. 69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 2010년에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링을 관장하는 주요 기관인 BPOM은 관세청 회람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에 관한 확인"을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및 음료 제품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규정(1999)에 따라, 식품 라벨링은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품의 명칭
○ 미터법에 의한 순중량 또는 순용량
○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 등록번호 성분표 혹은 성분 목록
○ 제품의 유통기일
○ 생산일자 혹은 생산번호

□ **수입제품의 라벨링에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아라비아 숫자 혹은 라틴어로 제한이 된다.**

□ **식품 라벨링의 구체적 내용 이외에, 소비자 보호법(1999)은 오해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한 일반 금지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동 금지조항들은 광범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기업사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관련"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포장식품을 수입하는 업체가 식품에 "halal"을 표기하고자 하면 동 내용에 대한 별도의 라벨링을 해야 한다.**

○ 인도네시아는 돼지고기를 제외한 수입 육류 제품의 경우,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halal인증기관이 발급한 Halal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동 목록은 halal-인증기관을 3개의 분류로 구분 한다.

- 소 도축 halal 인증
- 가공산업 halal 인증
- 향신료 halal 인증

□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어가 포함이 된 라벨링 견본을 국내교역국에 제출하고 라벨링 견본이 승인이 되면, 5 근무일 이내로 라벨링 인증서가 발급이 된다.**

제2절 라벨링 요구조건

□ **포장식품 라벨링 요구조건**

○ 식품라벨링 조건은 매우 광범위하여 제품의 유형에 따라 라벨링 요구조건이 상이하다. 라벨링 요구조건은 소매목적의 포장식품에만 해당 되며 다량 구매 혹은 업소/기관용 식품제품은 방사선조사 및 식품첨가제의 규정만 적용 받는다.

○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포장식품은 제품의 영양소 내용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소 라벨링은 규정 No.62 (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의 적용을 받는다.

○ 영양소 정보표시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영양소 보충제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지방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양에 기초한 전체 에너지양, 소금,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섬유질, 설탕, 비타민 및 미네랄 등의 총량

– 건강혜택에 관한 주장은 제품의 성분 및 일상적 일일 섭취량에 근거해야 하며, 암시적인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영양 및 건강 홍보 문구는 영양소 주장의 요구조건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영양 내용 : 제품의 1회 섭취량이 일일 영양소 기준치의 최소 5%를 포함할 경우
– 낮은 칼로리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저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40kcal 이하인 경우
– 무 칼로리 : 제품의 1회 섭취량의 칼로리량이 5kcal 이하인 경우
– 단백질 증강 : 제품의 칼로리량 중 20% 이상이 단백질이며, 1회 섭취량에 최소 10 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 낮은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3 그램 이하이거나, 1회 섭취량이 50 그램 이하일 때 총 50 그램의 경우
– 무 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지방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포화지방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포화지방이 1 그램 이하 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5% 미만일 경우, 또는, 스넥 혹은 음식제품의 100 그램당 포화지방이 1 그램 이하 이며, 칼로리의 총량 중 포화지방의 칼로리가 10% 미만의 경우
– 적은 포화지방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5% 이상 적을 경우
– 무 포화지방 : 제품이 100 그림/100 ml 당 포화지방 함량이 0.5 그램 이하일 경우

- 낮은 콜레스테롤 : 유사제품과 비교하여 1회 섭취량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25% 이상 적고, 1회 섭취량의 포화지방 함량이 2 그램 이하일 경우
- 저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0 밀리그램 이하 이고, 포화지방 함량이 2 그램 이하이거나, 또는, 1회 섭취량이 50 그램 이하일 때 총 50 그램의 경우
- 무 콜레스테롤 : 제품의 1회 섭취량에 포함된 콜레스테롤량이 2 밀리그램 이하일 경우

○ 건강홍보문구는 적법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기능성 주장만이 가능하며 허용되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건강 표시 사례	
허용되는 표현	허용되지 않는 표현
칼슘은 튼튼한 뼈 및 치아의 발달에 도움이 된다	자연섬유질이 포함된 음식은 건강 및 활력을 향상시켜준다
단백질은 신체조직의 발달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아동 및 유아용 DHA 함유 식품은 뇌세포 및 지능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
철은 적혈구 형성의 요인이다	간장은 IQ를 향상시킨다
비타민 E는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 제품별 구체적인 라벨링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돼지고기가 함유된 식품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돼지의 그림과 함께 붉은색, universe medium corps 12폰트로, “MENGANDUNG BABI”(돼지고기 함유) 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가당 연유 : 붉은색 사각 박스 안에 붉은 색, universe medium corps 8폰트로, “Perhatikan! Tidak Cocok untuk Bayi”(주의!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 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알콜 음료의 경우, 라벨링에 “MINUMAN BERALKOHOL, DIBAWAH UMUR 21 TAHUN ATAU WANITA HAMIL DILARANG MINUM”(21세 미만 및 임산부에 의한 사용 금지)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 방사선 조사된 포장식품은 “RADURA: PANGAN IRADIASI”(방사선조사

식품)의 문구, 방사선조사의 이유 및 해당의 로고가 표시되어져야 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방사선시설의 상호 및 주소, 방사선조사의 년월 및 방사선조사가 실시된 국가 등의 정보도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식품이 재-방사선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라벨링에는 "TIDAK BOLEH DIRADIASI ULANG" (재-방사선조사 불가) 의 문구가 있어야한다.

- 유전자 조작으로 발생된 식품은, 라벨링에 "PANGAN REKAYASA GENETIKA" (유전자조작식품)의 문구가 포함되어져야 한다.
- 식품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표준을 충족한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면, 포장재에 "Halal"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 수산물의 라벨링 요구조건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산제품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다

□ 신선 과일 및 채소의 라벨링 요구조건

인도네시아에서는 신선 과일 및 채소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다

□ 인삼의 라벨링 요구조건

인삼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조건은 없으나 생산자가 인삼제품의 영양소내용을 표시하고 싶다면 영영소 정보 라벨링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유아용 조제분유의 라벨링 요구조건

유아용 식품의 경우, 해당 식품이 모유를 대체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은 금지가 된다. 추가적으로, 영아용, 5세 미민의 아동, 임신 혹은 수유 중인 여성, 특수

식단, 노인,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 등을 위한 가공식품에는 1회 섭취량의 크기, 사용 방법, 지시 사항 및 식품의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특별한 라벨링 요구조건은 없으나 생산자가 인삼제품의 영양소내용을 표시하고 싶다면 영영소 정보 라벨링 요구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절 라벨링 사례

1. 올바른 라벨링 사례

라벨링 사례 : 과일 쥬스

1. 제품 명칭
2. 성분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수입자
6. 영양소 정보
7. Halal 인증
8. 유통기한

라벨링 사례 : 포장 식품	
1. 제품 명칭 2. 재료 3. 용량 4. BPOM 등록번호 5. 영양소 정보 6. 유통기한	

제4절 포장

1.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 HK.00.05.1.55.1621

□ **동 규정은 식품포장에 허용 또는 금지되는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BPOM 청장은 2009년 4월에 식품 포장 재료의 수입관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동 규정은 승인된 식품 포장 재료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

○ 포장의 규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산업규정 혹은 실무지침은 없으며 중량 및 척도의 단위로는 미터법이 사용된다.

○ 식품법(1996)에서 규제되는 포장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는 자는 금지되거나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2. 판매를 위한 식품의 포장에는 부패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식품의 포장에서 금지되는 포장재료 및 방법 등을 정의한다.
4. 포장 재료의 인체건강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해당의 포장 재료는 안전검사가 실시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가 없다. 새로운 재질의 포장 재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식품의 포장 재료로 사용 될 수가 있다.
5. 소형포장을 목적으로 하는 벌크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의 개봉 및 재포장은 금지가 된다.

〈자료 출처〉

□ BPOM (의약식품관리청) 발표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3.1.23.06.10.5166 – 의약, 전통의약, 보조식품, 식품의 라벨링에의 특정 물질, 알콜 함량 및 유통기한 정보의 표시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2.6291 – 식품제품 영양소 라벨링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2.4321 – 식품제품 라벨링 일반 규칙

○ 의약식품관리청 규정 No.HK.00.05.5.1142 – 식품제품 라벨링에 영양소 충분성, 백분율 표시의 표기

□ 관세청 발표

○ 관세청 규정 No.SE-19/BC/2010 – 수입 식품 및 음료 제품의 의무적 라벨링의 확인

○ 관세청 규정 No.P-35/BC/2007 – 면세점 판매제품의 관리 등록 라벨링 규정 No.P-23/BC/2007의 1차 개정

○ 관세청 규정 No.P-23/BC/2007 – 면세점 판매 제품의 관리 등록 라벨링

□ 무역부 발표

○ 무역부 규정 No. 22/M-DAG/PER/5/2010 - 제품 라벨링 의무 규정 No. 62/M-DAG/PER/12/2009에 대한 개정

○ 무역부 규정 No.62/M-DAG/PER/12/2009 - 제품 라벨링 의무

□ 기타

○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No.69/199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

부록

부록 1 : SIUP (무역면허) 견본

No. SDPJS 002297 SIUP-PM

PEMERINTAH KOTAMADYA JAKARTA SELATAN
SUKU DINAS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SIUP)-MENENGAH

Nomor : 01730 / 1.824.51

1.	Nama Perusahaan	: PT. INDOKARYA DUTA PERKASA.
2.	Merek (milik sendiri/lisensi)	: -
3.	Alamat Kantor Perusahaan & Kode Pos	: Wisma Pede Lt.5 Jl. MT. Haryono Kav.17 Kel. Tebet Barat, Kec. Tebet, Jakarta Selatan. No.Telp./Fax . (021) -
4.	Nama Pemilik/Penanggung Jawab	: Ir. LUKMAN HAKIM – Direktur.
5.	Alamat Pemilik/Penanggung Jawab	: Pondok Melati Indah B/A.2 Rt.004/02 Jatiwarna, Pondok Gede, Bekasi. No. Telp/Fax. -
6.	Nomor Pokok Wajib Pajak (NPWP)	: 02.342.441.6-015.000
7.	Nilai Modal dan Kekayaan Bersih	: Rp. 250.000.000.-
8.	Kegiatan Usaha	: Perdagangan barang dan jasa.
9.	Kelembagaan	: Sub. Distributor, Ekspor - Impor.
10.	Bidang Usaha (sesuai KBLI 2000)	: 51399, 51900, 74300, 74930.
11.	Jenis Barang/Jasa Dagangan Utama	: Alat tulis kantor/barang cetakan, Alat tehnik/mekanikal/ elektrikal, Jasa periklanan, Jasa pembersih.

SIUP ini diberikan dengan ketentuan :

Pertama : Berlaku untuk melakukan kegiatan usaha perdagangan diseluruh Wilayah Republik Indonesia selama perusahaan masih menjalankan kegiatan usaha perdagangan sesuai ijin ini.

Kedua : Tidak berlaku untuk melakukan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perdagangan berjenjang (MLM)** dan/atau kegiatan perdagangan lainnya yang diatur secara khusus dan atau dilarang oleh Pemerintah.

Ketiga : Perusahaan wajib menjalankan usaha berdasarkan ketentuan perundangan yang berlaku dan menyampaikan laporan pelaksanaan usaha dagangnya per semester kepada Kepala Dinas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Propinsi DKI Jakarta, paling lambat 30 hari setelah berakhirnya semester yang dilaporkan.

Keempat : Perusahaan wajib memberitahukan **setiap perubahan pada perusahaan**, yang menyebabkan SIUP ini tidak sesuai dengan keadaan perusahaan, kepada Kepala Dinas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Propinsi DKI Jakarta.

Kelima : Perusahaan wajib melaksanakan pendaftaran ulang SIUP setiap 5 (lima) tahun.

Dikeluarkan di Jakarta
Pada tanggal 24 MAY 2004
KSUKU DINAS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JAKARTA SELATAN
Kepala

Ir. S. Manalu
NIP/NRK.070005227/129561

SIUP BERLAKU SAMPAI DENGAN TANGGAL :

부록 2 : API–U (수입업자–유통 등록번호) 면허 양식

Lampiran V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I
Nomor : 45/M-DAG/PER/9/2009
Tanggal : 16 September 2009

Logo Depdag

DEPARTEMEN PERDAGANGAN

.....

.....

ANGKA PENGENAL IMPORTIR - UMUM (API-U)

Nomor : .....

Sesuai Berita Acara Pemeriksaan (BAP) Nomor ..... tanggal ..... ,
diberikan Angka Pengenal Importir Umum (API-U), kepada :

Nama/Bentuk Perusahaan	:
Alamat Kantor Pusat	:
Nama Penanggung Jawab	:
Telepon	:
Faksimil	:
Nomor Akte Notaris/Perubahan	:
Nomor SIUP atau izin usaha lain yang sejenis dari instansi/dinas teknis yang berwenang dibidang perdagangan	:
Nomor TDP	:
Nomor NPWP	:
Nomor Surat Ket. Domisili /sewa /kontrak	:
Jenis Barang/Jasa/ Dagangan Utama	:

API berlaku selama importir masih menjalankan kegiatan usahanya.

a.n. Menteri Perdagangan

.....

(_____)
NIP

Tembusan :
1. Direktur Impor, Ditjen Daglu;
2. Direktur Bank Indonesia/ULN;
3. Direktur Teknis Kepabeanan Bea dan Cukai, Depkeu
4. Ka. Dinas Perindag Kab/Kota.

부록 3 : API–P (수입업자–제조 등록번호) 면허 양식

Lampiran VI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I
Nomor : 45/M-DAG/PER/9/2009
Tanggal : 16 September 2009

Logo Depdag

DEPARTEMEN PERDAGANGAN

.....

ANGKA PENGENAL IMPORTIR – PRODUSEN

Nomor : .....

Sesuai surat Rekomendasi Pemerintah/Badan Pelaksana Nomor ..... tanggal ..... , diberikan Angka Pengenal Importir Produsen, kepada :

Nama/Bentuk :
Alamat Kantor :
Nama Penanggung Jawab :
Nomor Telepon :
Faksimil :
NPWP :
Nomor Kontrak Kerjasama :
Jenis Kegiatan :

API berlaku selama importir masih menjalankan kegiatan usahanya.

....., ...
a.n. Menteri Perdagangan

.....

(_____)
NIP

Tembusan :
1. Direktur Impor, Ditjen Daglu;
2. Direktur Bank Indonesia/ULN;
3. Direktur Teknis Kepabeanan Bea dan Cukai, Depkeu.

부록 4 : NPIK (특수 수입업자 등록번호) 발급 양식

Lampiran I

Keputusan Menteri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R.I

Nomor :

Tanggal :

No. Seri 0.0001

DEPARTEMEN PERINDUSTRIAN DAN PERDAGANGAN

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NPIK .....

NOMOR : .....

JENIS BARANG : .....

Sesuai dengan permohonan Saudara nomor ....., tanggal ....., dapat diberikan Nomor Pengenal Importir Khusus (NPIK), kepada :Nama/Bentuk Perusahaan :

.....

Alamat Kantor Pusat :

.....

.....

.....

Nama Penanggung Jawab :

.....

Telepon/Fax :

.....

Nomor API :

.....

2 (dua) lembar 3 x 4 Pas Poto Berwarna	Penanggung Jawab Ttd Stempel (Nama) Jabatan	Jakarta, ... 200. Direktur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 ()

부록 5 : 포장식품 ITPT 대상 목록

다음은 무역부 규정 No. 57/M-DAG/PER/12/2010에 의거 규제가 되는 포장식품 목록이다.

1	하얀 쵸코렛을 포함한 설탕 사탕류 (HS번호 : 1704100000, 1704901000, 1704902000, 1704909000)
2	쵸코렛 및 기타 코코아가 함유된 식품 (HS번호 : 1806100000, 1806201000, 1806209000, 1806311000, 1806319000, 1806321000)
3	맥아 추출물; 밀가루, 귀리, 전분 혹은 맥아 추출물의 식품재료, 코코아 미함유 또는 무지방으로 계산하였을 때 코코아 중량이 40% 미만, 기타에 미언급; 분류 04.01에서 04.04의 식품재료, 코코아 미함유 또는 무지방으로 계산하였을 때 코코아 중량이 5% 미만, 기타에 미언급 (HS번호 : 1901101000, 1901102000, 1901103000, 1901109000, 1901201000, 1901202000, 1901203000, 1901204000, 1901901000, 1901902000, 1901903100, 1901903900, 1901904100, 1901904900,1901909010, 1901909090)
4	파스타, 조리 또는 속이 채워진 (고기 또는 기타 재료) 또는 준비된, 스파게티, 마카로니, 국수, 라자냐, 그누치, 라비올리, 카넬로니, 쿠스쿠스, 미조리 상태 포함 (HS번호 : 1902110000, 1902192000, 1902199000, 1902201000, 1902209000, 1902301000, 1902302000, 1902309000, 1902400000)
5	시리얼 또는 시리얼제품의 부풀림 또는 구이를 통해 얻어지는 조리식품 (예, 콘후레이크) ; (옥수수가 아닌) 낱알 또는 후레이크 형태의 시리얼 및 (밀가루, 귀리 등이 아닌) 조리된 곡물, 기타에 미언급 또는 미포함 (HS번호 : 1904100000, 1904200000, 1904300000,1904901000, 1904909000, 1905100000)
6	코코아 함유에 관계없이 모든 빵, 페이스트리, 케익, 과자류 및 빵집 제품; 미사용 웨하스, 의약용의 속이 빈 과자류, 웨하스, 쌀과자 및 유사 제품 (HS번호 : 1905200000, 1905311000, 1905312000, 1905320000, 1905400000, 1905901000, 1905902000, 1905903000, 1905904000, 1905905000, 1905906000, 1905907000, 1905908000, 1905909000)
7	과일 쥬스 (포도 포함) 및 채소 쥬스, 미숙성, 알콜 미포함, 설탕 및 감미료의 첨가여부 무관 (HS번호 : 2009.12.00.00, 2009.21.00.00, 2009.31.00.00, 2009.41.00.00, 2009.50.00.00, 2009.61.00.00, 2009.71.00.00, 2009.80.10.00, 2009.80.90.00, 2009.90.00.00)
8	커피, 홍차, mate 등의 추출물, 에센스 및 엑기스 및 커피, 홍차, mate에 기초한 식품재료; 볶은 치커리 및 기타 커피 대용품 및 그 추출물, 에선스 및 엑기스 (HS번호 : 2101111000, 2101119000, 2101120000, 2101201000, 2101209000, 2101300000)
9	자연, 인조미네럴 및 탄산화된 물, 설탕, 감미료, 향료 등 미첨가; 얼음 및 눈; 미네럴수, 탄산수를 포함한 물, 설탕 및 감미료 첨가 (HS번호 : 2201100000, 2202101000, 2202109000, 2202901000, 2202902000, 2202903000, 2202909000)

부록 6 : 수산제품 수입허가

LAMPIRAN : 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Nomor PER.15/MEN/2011
Tentang Pengendalian Mutu dan Keamanan Hasil Perikanan yang Masuk ke Dalam Wilayah Negara Republik Indonesia

SURAT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KE DALAM WILAYAH REPUBLIK INDONESIA
Nomor:

Setelah memperhatikan Surat Permohonan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dari ..... dan berdasarkan hasil pemeriksaan kelengkapan dokumen pendukung, maka dengan ini Direktur Jenderal Pengolahan dan Pemasaran Hasil Perikanan, menyetujui pemasukan hasil perikanan untuk ..... oleh:

a. Nama Perusahaan :
b. Alamat :
c. Nomor Telepon :
d. Nomor Fax :
e. NPWP :
f. Nomor Akte Perusahaan :
g. Nama Penanggung Jawab :

Dengan rincian sebagai berikut:

No.	Nama Dagang/ Nama Ilmiah	Jenis (Kode HS)	Volume (Kg)	Sarana Pengangkutan	Negara Asal	Tempat Pemasukan	Jadwal Pemasukan	Maksud dan Tujuan
1.								
2.								
Total								

Masa berlaku izin pemasukan hasil perikanan:

Jakarta,

Direktur Jenderal
Pengolahan dan Pemasaran Hasil Perikanan

Nama

Tembusan:
1. Direktur Jenderal Pengawasan Sumber Daya Kelautan dan Perikanan;
2. Kepala Badan Karantina Ikan, Pengendalian Mutu dan Keamanan Hasil Perikanan;
3. Kepala Dinas Kelautan dan Perikanan Provinsi (tempat digunakan);
4. Kepala UPT Karantina Ikan (Tempat Pemasukan);
5. Kepala Kantor Pengawasan dan Pelayanan Bea dan Cukai (Tempat Pemasuk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REPUBLIK INDONESIA,

ttd.

FADEL MUHAMMAD

Salinan sesuai aslinya
Kepala Biro Hukum dan Organisasi,

Supranawa Yusuf